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13
----------	-------

발의연월일 : 2025. 8. 18.

발 의 자 : 진선미 · 이기현 · 문정복
김한규 · 정동영 · 이수진
최혁진 · 양문석 · 박상혁
윤종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원경찰은 청원주(국가기관 · 공공단체의 장이나 중요 시설 · 사업장의 경영자)가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채용 · 배치하는 경찰로서 그 소속된 기관 · 시설 또는 사업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함.

그런데 최근 청원경찰이 노사분쟁의 개입하는 등 그 본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청원주가 이를 강요하는 정황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또한,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승인없이 청원경찰을 임용한 자와 청원경찰에게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배치된 기관 ·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청원주는 청원경찰로 하여금 이러한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청원경찰의 의무등을 신설하고 관련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여 청원경찰의 적정한 경비업무 수행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11조 및 제12조).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청원경찰의 의무 등) ① 청원경찰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청원주는 청원경찰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중 “제9조의4를 위반하여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사람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청원경찰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청원주

2. 제9조의4를 위반하여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제5조제1항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의2(청원경찰의 의무 등) ①</u> <u>청원경찰은 직무를 수행할 때</u> <u>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위</u> <u>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u> <u>사하는 등 배치된 기관·시설</u> <u>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업무 범</u> <u>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u> <u>아니 된다.</u> <u>② 청원주는 청원경찰로 하여</u> <u>금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u> <u>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u> <u>행사하는 등 배치된 기관·시</u> <u>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업무</u> <u>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u> <u>여서는 아니 된다.</u>
제11조(벌칙) <u>제9조의4를 위반하</u> <u>여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u> <u>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u> <u>는 쟁의행위를 한 사람은 1년</u> <u>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u> <u>하의 벌금에 처한다.</u> <u><신 설></u>	제11조(벌칙) <u>다음 각 호의 어느</u> <u>하나에 해당하는 자는-----</u> <u>-----</u> <u>-----.</u> 1. <u>제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u> <u>청원경찰로 하여금 정당한 사</u>

<신 설>

제12조(과태료) <신 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유 없이 타인에게 위력을 과
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청원
주

2. 제9조의4를 위반하여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
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
행위를 한 사람

제1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시·도경
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
거나 제5조제1항에 따른 시·
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
니하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3
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
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② -----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시·도경 <u>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u> <u>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u> <u>거나 제5조제1항에 따른 시</u> <u>·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u> <u>아니하고 청원경찰을 임용한</u> <u>자</u> 2. <u>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3</u> <u>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시</u> <u>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u> <u>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u> 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부과·징수 한다.	-----. <삭 제> <삭 제> 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 ----- ----- -----.
--	--